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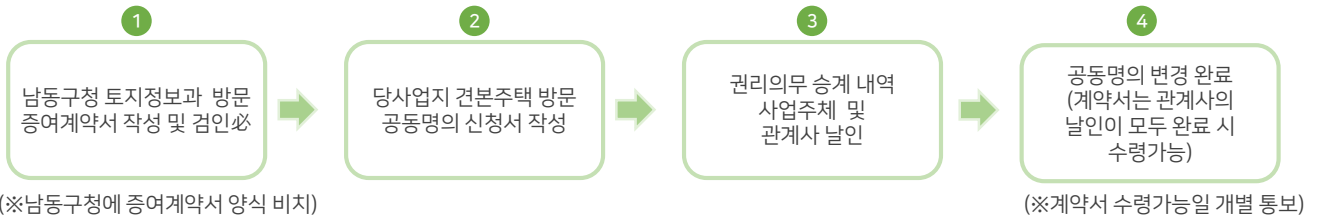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4항 7호 규정에 의거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에도 가능하며, 이에 부부 공동명의를 희망 하시는 계약자님은 아래의 기간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 접수일정 및 접수장소

일정	2020년 9월 10일~11일 [2일간, 10시~16시]
장소	이안 논현 오션파크 견본주택 (인천 남동구 논현동 677-5)

■ 부부 공동명의 명의변경 절차



■ 구비 서류

순서	구분	구비서류
1. 증여계약서 검인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5)	- 증여계약서(남동구청 비치) - 공급계약서(사본제출) - 신분증 (증여자/수증자) - 인감도장 ※ 안내서류는 남동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가 된 부부간 일부 증여만 가능하며, 100%증여 또는 제3자 전매는 불가 합니다.
2. 부부공동명의 변경신청 견본주택 (1877-2135)	필수서류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 증여 계약서(검인 날인)
	증여자 (계약자)	-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수증자 인적사항 필히 기재,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분리세대에 한함) - 신분증/인감도장 - 명의변경 신청 및 전매동의서(견본주택비치)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견본주택비치) ※ 증여자,수증자 본인 함께 방문 (증여자는 본인 방문 필수, 수증자는 위임 가능)
	수증자 (배우자)	-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에 한함) - 신분증/인감도장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견본주택비치) ※ 수증자(배우자)위임 시, 수증자의 인감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구비서류는 1개월(신청일기준) 내 본인발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부부공동 명의인 전매승인이 불가합니다.

■ 유의 사항

- 부부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대출 및 세금 관련, 기타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시 반드시 증여자(계약자)과 수증자(배우자)께서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는 전매 1회 행위로, 부부공동 명의변경시 아파트 등기전까지 전매행위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